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7.8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Content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3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15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177

[참고자료]

·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 · 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4-15호, 2014.2.4., 제정) ····· 207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 일부개정) ····· 209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269호, 2017.7.19., 일부개정) ····· 213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676호, 2016.10.10., 일부개정) ····· 226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22호, 2016.6.29., 일부개정) ····· 231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 일부개정) ····· 240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534호, 2014.12.1., 제정) ····· 245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12호, 2016.11.28., 일부개정) ····· 252

·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52호, 2016.3.4., 제정) ·· 258

· 2003~2017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량) ····· 260

【 목 차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3	제1조(목적) ····· 3	제1조(목적) ····· 3
제2조(정의) ····· 3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 3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 4
		제2조(재활용제품) ····· 5
		제3조(재활용시설) ····· 5
	제4조(재활용산업) ·····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 6	
	제5조(1회용품) ····· 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 7
	제5조의2(재질 · 구조개선 대상제품) ····· 7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 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8		
제5조(사업자의 책무) ····· 9		
제6조(국민의 책무) ····· 9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 10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 10	
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 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 12	제6조의2(자원순환성 평가항목 등) ····· 13 제6조의3(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및 대책 등) ····· 13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14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14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 15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8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16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16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18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8		제4조의3 삭제 <2009.4.7.>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 19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9	
제12조(폐기물부담금) ····· 20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20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 22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22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 23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 22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24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 25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 25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 26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 27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 27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 28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28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 28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 2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 30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30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31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31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 31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 32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32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33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 33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34		
제14조(분리배출 표시) ····· 35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 35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36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37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37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 37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 38
		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 38
		제12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 39
		제12조의4(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 40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 40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 41
		제12조의6(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 4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 42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42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42 제19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47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 48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 48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48
제17조(재활용의무율) ····· 49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 49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50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 49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 50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51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51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54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51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52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53 제27조(재활용비용) ····· 54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 55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52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53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 55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 55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 56	제18조의3[제12조로 이동 <2009.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 57	
	제30조 삭제 <2007.12.28.>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제31조 [제17조로 이동 <2009.4.6.>]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57		
제21조 삭제 <2007.4.27>		
제22조 삭제 <2008.3.21>		
제22조의2 삭제 <2008.3.21>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 58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 58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58	
제24조 삭제 <2007.4.27.>	제34조 삭제 <2007.12.28>	
제24조의2 삭제 <2014.1.21.>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 60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60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61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 62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 62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 62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 65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 64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 65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65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 6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등) ····· 66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 6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 67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 68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 68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70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70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 70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 71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72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72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 72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 72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73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73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 74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 74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 75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75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 76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 76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 78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 77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7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78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79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80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80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 81		제21조의2(빈용기의 회수 및 촉진을 위한 사업) ····· 81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 82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 8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 82		제23조(인가의 취소) ····· 83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 83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83
제29조(분담금 등) ····· 83		
제30조(「민법」의 준용) ····· 84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85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 85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 86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86	제38조 삭제 <2005.6.13>	
	제39조 삭제 <2005.6.13>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87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 87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 8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 8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 88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88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 89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 89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90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90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 90	
	제45조 삭제 <2009.4.6>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91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 91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 92		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92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92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 93		
제5장 보칙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 93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 93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 95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95		
제35조의3(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 ····· 96	제46조의3(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 95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97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97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 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 100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101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 101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 102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 102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 102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03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103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07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 107	
제38조의2(청문) ····· 108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 108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108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 109		
제39조의2(벌칙) ····· 109		
제40조(양벌규정) ····· 109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111	
제41조(과태료) ····· 111		
제42조 삭제 <2014.1.21.>		
	부 칙 ····· 113	부 칙 ····· 113
부 칙 ····· 113	시행령 별표 ····· 139	시행규칙 별표 ····· 157
		별지서식 ····· 17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2. 12. 08. 법률 제4538호	제정 1993. 06. 24. 대통령령 제13915호	제정 1993. 07. 31. 총 리 령 제429호
전문개정 2002. 02. 04. 법률 제6653호	전문개정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	전문개정 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
개정 2003. 12. 30. 법률 제7021호	개정 2004. 06. 25. 대통령령 제18442호	개정 2004. 04. 17. 환경부령 제155호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78호	개정 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	개정 2004. 12. 10. 환경부령 제164호
개정 2006. 09. 27. 법률 제8012호	개정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1호	개정 2005. 12. 30. 환경부령 제188호
개정 2007. 01. 03. 법률 제8212호	개정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4호	개정 2006. 06. 29. 환경부령 제211호
개정 2007. 04. 11. 법률 제8427호	개정 2006. 06. 29. 대통령령 제19572호	개정 2006. 11. 10. 환경부령 제220호
개정 2007. 08. 03. 법률 제8611호	개정 2007. 03. 27. 대통령령 제19971호	개정 2007. 03. 28. 환경부령 제211호
개정 2008. 03. 21. 법률 제8948호	개정 2007. 06. 11. 대통령령 제20088호	개정 2007. 06. 29. 환경부령 제234호
개정 2009. 02. 06. 법률 제9433호	개정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79호	개정 2007. 12. 31. 환경부령 제267호
개정 2010. 07. 23. 법률 제10389호	개정 2008. 07. 03. 대통령령 제20905호	개정 2009. 04. 07. 환경부령 제329호
개정 2011. 04. 28. 법률 제10615호	개정 2009. 04. 06. 대통령령 제21415호	개정 2009. 07. 13. 환경부령 제340호
개정 2011. 07. 21. 법률 제10893호	개정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8호	개정 2009. 12. 31. 환경부령 제356호
개정 2012. 02. 01. 법률 제10262호	개정 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35호	개정 2010. 12. 31. 환경부령 제390호
개정 2013. 03. 23. 법률 제10690호	개정 2011. 03. 22. 대통령령 제22715호	개정 2011. 10. 28. 환경부령 제428호
개정 2013. 05. 22. 법률 제11788호	개정 2012. 07. 20. 대통령령 제23966호	개정 2012. 07. 04. 환경부령 제463호
개정 2013. 08. 13. 법률 제12076호	개정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	개정 2012. 11. 01. 환경부령 제484호
개정 2014. 01. 21. 법률 제12319호	개정 2013. 01. 21. 대통령령 제24331호	개정 2013. 01. 31. 환경부령 제497호
개정 2015. 01. 20. 법률 제13036호	개정 2013. 0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개정 2013. 03. 23. 환경부령 제503호
개정 2016. 05. 29. 법률 제14230호	개정 2013. 0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 2013. 11. 22. 환경부령 제525호
	개정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	개정 2014. 02. 12. 환경부령 제545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 2014. 01. 31. 대통령령 제25133호 개정 2014. 02. 11. 대통령령 제25167호 개정 2014. 07. 16. 대통령령 제25476호 개정 2014. 07. 21. 대통령령 제25497호 개정 2014. 10. 22. 대통령령 제25664호 개정 2014. 12. 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 2015. 02. 03. 대통령령 제26088호 개정 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7호 개정 2016. 01. 19. 대통령령 제26906호 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 개정 2017. 01. 26. 대통령령 제27806호 개정 2017. 03. 29. 대통령령 제27971호	개정 2014. 04. 30. 환경부령 제553호 개정 2014. 06. 05. 환경부령 제560호 개정 2014. 07. 22. 환경부령 제567호 개정 2015. 10. 23. 환경부령 제617호 개정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 개정 2016. 01. 21. 환경부령 제638호 개정 2016. 04. 29. 환경부령 제650호 개정 2016. 12. 30. 환경부령 제684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 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4.6.]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전문개정 2009.4.7.]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4.7.]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4.6.]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재 및 냉·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4.6.]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6.]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4.7]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	**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4.6]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개정 2008.3.21>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3.21.>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제6조의2(자원순환성 평가항목 등)** ① 법 제8조의2제5호에서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인화성, 폭발성 등 그 유해성에 관한 사항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3.23>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4.6.] **제6조의3(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및 대책 등)**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2. 자원순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성에 관한 정보의 보급 3. 자원순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보급 4.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원순환성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6.]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11.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삭제 <2015.11.26> 마. 삭제 <2009.12.31> [전문개정 2009.4.6.]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2.1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2.12.]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 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조신설 2007.5.11]		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4.7]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2009.4.6.]	**제4조의3** 삭제 <2009.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2017.1.17., 타법개정] [시행 2018.1.18.]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0.12.20, 2013.11.20>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 <개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10.22, 2017.3.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전문개정 2009.4.6.]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2.11.1.]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2.10.29.]	[전문개정 2009.4.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연간 출고·수입량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연간 출고·수입량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제품·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1.31.]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본조신설 2013.1.3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수입실적 및 회수·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13.1.22.]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전문개정 2009.4.6.]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4.6.]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경우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조신설 2014.2.11]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2.11.>]	[본조신설 2014.2.1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2.12.>]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3.8.13.>]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08.3.21]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8.13>]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2.11>]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4.7.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09.4.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2.12.>]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10.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전문개정 2009.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4.6.]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5.22.]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09.12.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물 [전문개정 2009.4.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09.4.6>]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유통지원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 **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1> [전문개정 2009.4.7] [제19조에서 이동 <2009.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12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2 제4항에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1.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2. 임차료 등 빈용기 보관에 드는 비용 3. 빈용기 운반에 드는 차량·유류비 ②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1.21.]
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본조신설 2008.3.21] [제목개정 2015.1.20.]		**제12조의4(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지원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1.21.>]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의2.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본조신설 2008.3.21]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1>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가 미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1.21.>]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제12조의6(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1.]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2016.12.30., 일부개정] [시행 2018.1.1]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말한다)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11.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2013.11.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6.1.19.]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전문개정 2009.4.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6.1.19.]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전문개정 2009.4.7.]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1.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3.5.22.]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3.11.20.]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 2013.11.20, 2016.1.1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3.11.20.]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3.11.20.]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내역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7.]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2012.10.29, 2013.11.20> [전문개정 2009.4.6.]	② 영 제2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본조신설 2012.11.1.]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1.20, 2014.10.22> 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제18조의3** [제12조로 이동 <2009.4.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4.6.]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13.11.20]	
제21조 삭제 <2007.4.27>	**제30조** 삭제 <2007.12.28.>	
제22조 삭제 <2008.3.21>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제22조의2 삭제 <2008.3.21>	**제31조** [제17조로 이동 <2009.4.6.>]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전문개정 2009.4.6.]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34조 삭제 <2007.1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 삭제 <2007.4.27.> **제24조의2** 삭제 <2014.1.21.>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2] [시행일:2016.7.30]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일 이내에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2.]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22]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계획서를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2.]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2.]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우 2.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 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구매량(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및 사용량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③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4.29>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4.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재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3. 재개검사: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터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飛散)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Sm³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m³ 이하 [본조신설 2014.7.22.]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 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7.22.]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질검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1.]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1.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④ 삭제 <2013.11.22> ⑤ 삭제 <2013.11.22> [전문개정 2009.4.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		**제21조의2(빈용기의 회수 및 촉진을 위한 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5.22.]		법 제28조의2제4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1.]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2.]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1.]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08.3.21.>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6.]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4.6]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8조** 삭제 <2005.6.13>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1.]	**제39조** 삭제 <2005.6.1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12.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4.6.]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4.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삭제 <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6.] **제45조** 삭제 <2009.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7.]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9.4.6.]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고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0.]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제46조의3(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사업의 조정(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4.1.21> 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제목개정 2014.1.21.] **제35조의3(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하는 관련 기관·단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22> [본조신설 2014.2.1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전문개정 2008.3.21]		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삭제 <2012.11.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1.21> 6. 삭제 <2016.1.21> 7. 삭제 <2016.1.21> 8. 삭제 <2016.1.21> 9. 삭제 <2016.1.21> [전문개정 2009.4.7.]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본조신설 2016.1.21.]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0.]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09.4.6.]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1]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1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1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의3.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14.7.21>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09.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1.26.]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4.6.]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제3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 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액: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4.1.21.]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4.1.21.]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제42조** 삭제 <2014.1.21.>		
부칙 <제6653호, 2002.2.4.>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부칙** <제17808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호, 200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21호, 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3호, 2003.12.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96호, 2004.12.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㉗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67호, 2004.1.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 200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8428호, 2004.6.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 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 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64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	**부칙** <제18863호, 2005.6.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부칙** <제188호,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7778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4호, 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8012호, 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006호, 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7호, 2006.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4호, 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1호, 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 2006.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부칙** <제19572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8212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1호, 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부칙** <제231호, 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 2007.1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㉙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5호, 2007.4.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27호, 2007.5.11.>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88호, 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호, 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611호, 2007.8.3.>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9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 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7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8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7호, 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1호, 2008.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2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 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84호, 2009.4.1.> (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제21415호, 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6호, 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제329호, 2009.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5호, 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40호, 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⑰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8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89호, 2010.7.23.>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90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㉘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칙** <제22497호, 2010.11.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35호,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카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0615호,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15호, 2011.3.2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제428호, 2011.10.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1262호, 20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㉕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155호, 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8조 ··· <생략>···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칙**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11.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8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이후 수입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31호, 2013.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97호, 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6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69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 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319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	**부칙** <제25133호,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67호, 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6호, 2014.7.16.>	**부칙** <제545호, 2014.2.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14.6.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14.7.2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497호, 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4호,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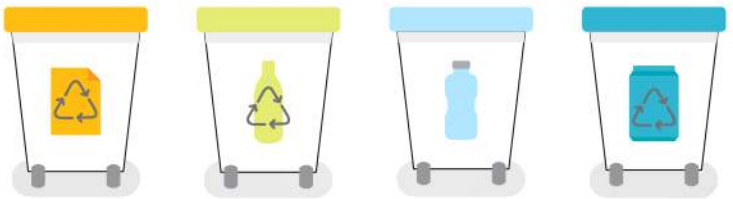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13036호, 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88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67호, 2015.11.26.>	**부칙** <제617호,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 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4230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06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3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	**부칙** <제638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 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제14532호,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06호, 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71호, 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09.4.6.>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 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6. 12. 30.>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 표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한다.
3.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4.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10억원 ÷ 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

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7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나.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6.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연간 매출액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별표 3] <개정 2009.12.31.>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별표 4] <개정 2015.11.26.>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매출 · 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 · 수입량 기준
1. 종이팩 · 금속캔 · 합성수지 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 · 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 · 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업종	규모	
	매출 · 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 · 수입량 기준
8.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 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 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 · 수입액 및 출고 · 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포장재의 출고 · 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9.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3.11.20.>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耐久年數)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장기 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율"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1/5	1/4	1/3	1/2	1

   3) "재활용률"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줄인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5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전전년도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재활용률" 대신 "전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5) "조정계수"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낮출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6. 12. 30.>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 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kg당 185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kg당 87원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 · 발포폴리프로필렌(EPP) ·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 · 복합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17원 kg당 981원 kg당 178원 kg당 235원 kg당 360원 kg당 327원 kg당 467원 kg당 467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완충재 나. 단일 · 복합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kg당 317원 kg당 467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단일 · 복합재질 1회용 봉투 · 쇼핑백	kg당 467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0.8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타이어	kg당 30원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윤활유	ℓ당 20원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형광등	개당 143원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kg당 627원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kg당 527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kg당 545원

※ 비고

1.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의 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4.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5.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별표 7의2] <신설 2014.7.21.>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금지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금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연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해당 고형연료제품이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출기준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000톤 이하	50,000원
1,000톤 초과 2,500톤 이하	100,000원
2,500톤 초과 5,000톤 이하	200,000원
5,000톤 초과 7,500톤 이하	300,000원
7,500톤 초과 10,000톤 이하	400,000원
10,000톤 초과 12,500톤 이하	500,000원
12,500톤 초과 15,000톤 이하	600,000원
15,000톤 초과 17,500톤 이하	700,000원
17,500톤 초과 20,000톤 이하	800,000원
2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900,000원
25,000톤 초과 30,000톤 이하	1,000,000원
30,000톤 초과 40,000톤 이하	1,500,000원
40,000톤 초과 50,000톤 이하	2,000,000원
50,000톤 초과 60,000톤 이하	2,500,000원
60,000톤 초과 70,000톤 이하	3,000,000원
70,000톤 초과 80,000톤 이하	3,500,000원
80,000톤 초과 90,000톤 이하	4,000,000원
90,000톤 초과 100,000톤 이하	4,500,000원
100,000톤 초과 120,000톤 이하	5,000,000원
120,000톤 초과	6,000,000원

[별표 8] <개정 2016.1.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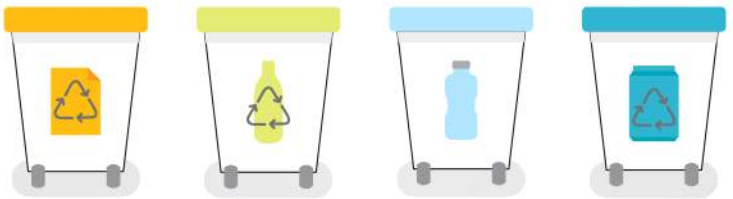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m2 이상 1,000m2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m2 미만인 경우		10	30	50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차.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카.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150	200	300
파.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	50	70	100
거.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1호	50	150	300
너. 법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더.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3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4호	100	150	200
머.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5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6호	50	70	100
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개정 2016. 4. 29.>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 · 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 · 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삭제 <2013.1.31.>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삭제 <2013.1.31.>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삭제 <2013.1.3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별표 2] <개정 2014.2.1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 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무상제공금지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2.12.>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6.1.21.>

빈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 상 품 목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2.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 상 품 목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별표 5] <개정 2016.1.21.>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준수사항
   가.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것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유통지원센터에 납부할 것
   다.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라.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제품의 빈용기가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돌려줄 것. 다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한 자가 표준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마.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바. 빈용기의 분류 및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및 빈용기 회수를 늘릴 것
   사.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할 것
   나.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전액 소매업자에

지급할 것
다.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할 것
라.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회수 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할 것
마.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플라스틱 박스 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할 것
바.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포함 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할 것
라.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도매업자 및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 시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할 것
마.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의 가격과 빈용기보증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구분하여 표시할 것
바. 유통지원센터가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4. 유통지원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빈용기 반환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
다. 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것
라.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것
마. 라목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별표 6] <개정 2016.1.2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7. 전지류 :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8. 타이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별표 7] <개정 2016. 4. 29.>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회분		wt.%	20 이하			
염소		wt.%	2.0 이하			
황분		wt.%	0.6 이하			
금속성분	수은(Hg)	mg/k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3. 비성형제품으로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0호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 함유량은 2.0wt.% 이하로 한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회분		wt.%	15 이하			
염소		wt.%	0.5 이하			
황분		wt.%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95 이상			
금속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롬(Cr)		70.0 이하			

※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8] <개정 2014.7.2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검사비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별표 9] <개정 2016. 4. 2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보관 중 고형연료제품의 성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햇빛이나 빗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

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 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저장용량(최소 2일분 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바. 이송시설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체, 낌,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선별된 후 발생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 건조시설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을 「악취방지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개정 2015.12.22.>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0제1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열 발산이 잘 되도록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더미의 최대 높이는 7.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고형연료제품 보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더미의 크기를 감소시켜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라. 고형연료제품을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이 비에 젖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삭제 <2015.12.22.>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한 후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것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표 11] <신설 2014.7.2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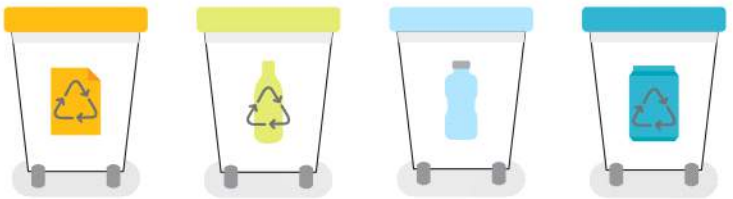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하여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 제2항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금지명령 1개월	금지명령 3개월	금지명령 6개월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2>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 재료 · 용기 출고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폐기물 부담금 산출 명세	① 제품명	② 수량 (껌제품은 판매액)	출고단위 (kg,L,개,원)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 (껌제품은 요율)	④ 부담금 납부금액(원) (② × ③)	⑤ 연간 총매출액(천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⑥ 감면조건	⑦ 감 면 액(원)	⑧ 감면 후 부담금 납부금액(원) (④ - ⑦)
	[ ]10억원 [ ]10,000k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 재료 · 용기 출고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의 판매액을 적습니다.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요율을 적습니다.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요율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
⑤ 연간 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적습니다.
⑥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제조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⑦ "⑥번"에서 선택한 감면조건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습니다.
⑧ "④번"의 부담금 납부금액에서 "⑦번"의 감면액을 감하여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실적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2>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수입자 (화물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수입대행자	상호	무역업 고유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세관수입 신고번호	① 관세통합품목 분류표(HSK)	② 제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kg,ℓ,개,원)	단가(원)	연간 수입금액(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③ 합성수지 투입량(kg)	④ 감면조건 [ ] 미화 9만달러 [ ] 3천kg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명 및 규격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합성수지 투입량을 적습니다.
④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수입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5>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재 활 용 부 과 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부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4.6.5>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부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부자 주 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 목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4>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기	5월 20일		
	제 2기	7월 20일		
	제 3기	9월 20일		
	제 4기	11월 20일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재활용 이행결과 (단위:kg,ℓ,개)	① 품목	② 출고량·수입량	③ 재활용실적	④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위탁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1부 2.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1부 3. 그 밖에 회수·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없 음

작성요령

①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PE관, 전력선)
②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④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3.1.31>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단위: ㎏, ℓ, 개)

연월일	① 회수 내용		처리 내용					④ 보관량
	업체명	회수량	② 재활용		③ 그 밖의 사항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① 재활용 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 대상 제품·재료·용기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사 유	[ ] 수입 내용 변경 [ ] 수 출

품목		변경된 I/L No. 또는 수출증명서류 No.	
반환청구금액		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반환청구금액 검토 (수출입 여부 조사)	→	반환금액 결정	→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
청구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청구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31>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

문서번호:

받 음:

폐기물부담금액	반환 결정금액	반환 결정일자	반환금지급장소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4.6.5>

폐기물부담금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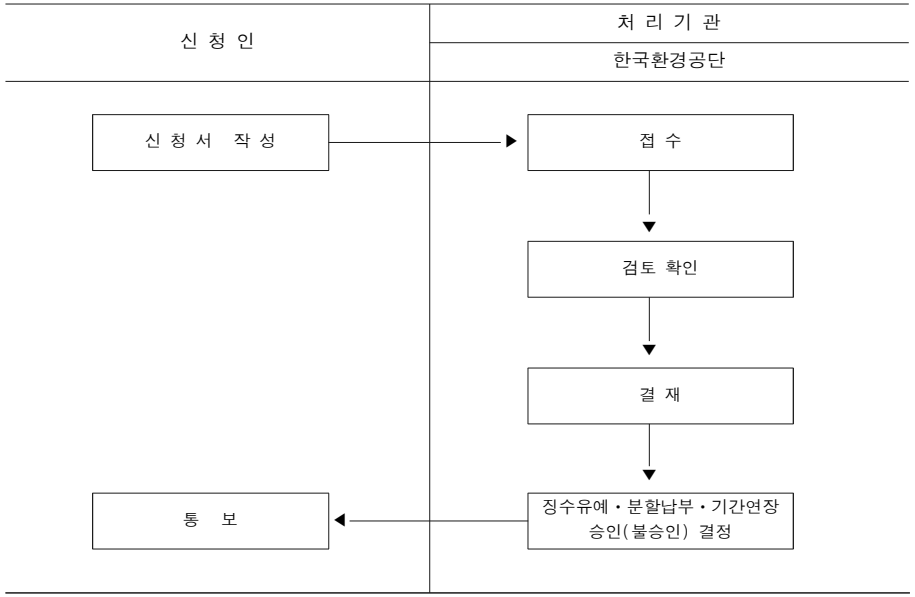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4.6.5>

폐기물부담금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승인 [ ] 불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불승인의 이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14.2.12>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14.6.5>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기간연장 신청내용	조치명령 및 기간	이행 완료 예정일
	조치명령 내용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신청 내 용	대상품목	제품규격
	제품·포장재 재질(성질·상태)	포장재 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서류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서류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재질·성질·상태 확인)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4>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제 호)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신청 내 용	대상품목			
	제품·포장재 재질(성질·상태)			
	제품규격			
	포장재 무게			
지정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6.1.21.>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내용	표준용기 코드	표준용기 사용 제품명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	연간 예상 출고량(용도별)
	연간 예상 회수량	출고 및 회수 지역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① 표준용기 코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용기 중, 사용하고자 하는 표준용기 코드를 적습니다.
②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는 주입되는 음료의 종류를 적습니다.(예: 소주/맥주/음료 등)
③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은 세병기, 공병검사기(Empty Bottle Inspection), 제품검사기(Filled Bottle Inspection) 등 재사용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결재	→	등록여부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유통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유통지원센터)**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1.>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미반환보증금(백만원)	② 사용용도	지출액(백만원)
전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실적			

	① 미반환보증금 예상액(백만원)	② 예상 사용용도	지출 예상액(백만원)
( )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 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다.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마. 빈용기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바.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당해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적정여부 통보
제출인 (유통지원센터)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제출인 (유통지원센터)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2.7.4>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③연간 총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료제출 내 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종이팩, 타이어)
② 해당업체의 전년도 연간총매출액(총수입액)을 기재(포장재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의무율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직접	위탁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⑥ 수탁자 및 소재지	⑦ 방법 및 기준

⑧ 회수·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합니다) 1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O표를 합니다.
④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인계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상태(선별, 압축 등)를 적습니다.
⑥ 회수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⑧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3.11.22>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③ 회수의무 대행자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약정서에 의해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회수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결재	→	승인 통보
제출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③ 출고 예상량 (개)	④ 재활용의무량 (③×80%)
	① 제품명	규 격(㎖)	빈용기보증금 (원/개)	② 취급수수료 (원/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없음

작성요령

①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습니다.
② 도매·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해당 연도의 출고 예상량을 적습니다.
④ 해당 연도 출고 예상량의 80%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결재	→	승인 통지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1.2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직접	위탁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및 기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3.11.2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회수의무 대행자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단위:kg,ℓ,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회수			재활용			회수·재활용 실적
					업체명	회수량 (인계량)	방 법	업체명	회수량 (인수량)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결재	→	부과금납부 고지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1.>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빈용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출고량		재활용 의무량		회수량		재사용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wt%)
	제품명	규격 (㎖)	빈용기 보증금 (원/개)	취급 수수료 (원/개)	중량 (g/개)	(개)	(kg)	(개)	(kg)	(개)	(kg)	(개)	(kg)	(개)	(kg)	
	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품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합니다) 지급 내역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회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2. 재사용량은 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재사용된 빈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3. 재활용량은 회수된 빈용기 중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빈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4. 재활용률은 출고량 중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제출인) → 접수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검토 (적정여부 확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결재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부과금납부 고지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2.11.1>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회	7월 20일		
	제 2회	9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검토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결재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6. 4. 29.>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수입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체	상호(영문)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No.)	
	사업장 소재지			
	① 제조공정			

수입 예정 연월일	국내 하역항	제조국(수출국) 및 경유국

수입 고형연료제품 종류(품목)	② HSK No.(10자리)	③ 수입량(톤)	④ 운반계획		공급계획		
			운반자	운반 종류	업체명	사용시설 종류	공급량(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16. 4. 29.>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 고형연료제품	① 종류(품목)	
	② 제조량(톤)	
	③ 제조공정	

공급계획	업체명	사용시설 종류	공급량(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①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가 여럿일 경우 그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②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을 적습니다.
③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무엇을 원료로 무슨 시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는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16. 4. 29.>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 □ 사용) 신고확인증

1. 신고번호 : 제 호

2.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 (생년월일:)

4.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제조신고의 경우(제조시설 소재지)
사용신고의 경우(사용시설 소재지)

5.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6.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 :

7.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

※ 제조신고의 경우(연간 예상 제조량)
사용신고의 경우(연간 예상 사용량)

8. 그 밖의 참고사항 :

※ 수입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물량 및 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제조국 및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주소, 수입유효기간, 예상도착항, 국내 수요처 등)
제조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결과서 발급번호, 수요처 등)
사용신고의 경우(고형연료제품 공급처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3항,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16. 4. 29.>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번호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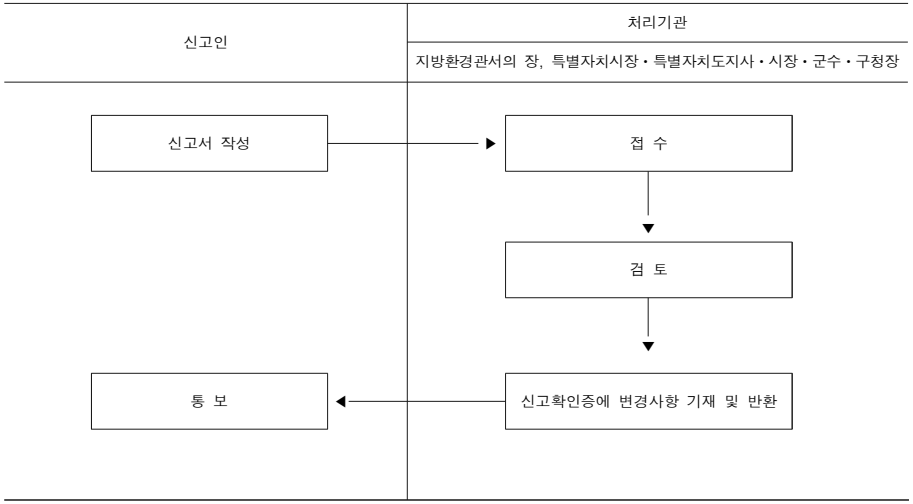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16. 4. 29.>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연장: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	①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제조국·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②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③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
	④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
	⑤ 검사신청물량(수입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작 성 방 법

①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국 및 제조업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합니다)나 제조시설(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바로 품질검사 시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위치한 장소를 적습니다.
④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형태(예: 창고보관, 야적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16. 4. 29.>

발급번호 제 호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 및 검사물량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 및 구성비율)	
	제조국·제조업체(수입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 장소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검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개정 2016. 4. 29.>

(□ 수입 / □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제조 신고번호					
	제조국·제조업체 (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종류	□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성형	□ 비성형	
	원재료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혼합폐기물				
	모양 및 크기	직경/가로		길이/세로		
		mm		mm		
	원소 성분 등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Cl)	황분(S)
		wt.%	kcal/kg	%	%	%
		바이오매스(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경우만 기재)				%
	금속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수은(Hg)	카드뮴(Cd)	납(Pb)	비소(As)	크롬(Cr)
		mg/kg	mg/kg	mg/kg	mg/kg	mg/kg
		안티몬(Sb)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mg/kg	mg/kg	mg/kg	mg/kg	mg/kg
		탈륨(Tl)	바나듐(V)			
		mg/kg	mg/kg			
		기타:				

선택 기재 항목

고형연료제품 품질내용	원재료의 성상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기 타
		%	%	%	%	%	%
	물리적 성상	겉보기 밀도		휘발분		회 용융 온도	
		g/㎤		%		℃	
	원소 성분 □ 건조기준 □ 반입/반출기준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신설 2014.7.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공급자		① 사용시설명	② 사용연료 종류	③ 사용량 (톤/일)	④ 사용기간
상호(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구매량(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및 사용량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없음

작 성 방 법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시설의 명칭(예: 시멘트소성로)을 적습니다.
②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품목)를 적되, 다른 연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의 종류도 적습니다.
③ 고형연료제품의 예상 일일 사용량을 톤 단위로 적되, 다른 연료와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료의 사용량도 적습니다.
④ 고형연료제품의 예상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 검 토 (처리기관) → 통 보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서식] <개정 2016. 4. 29.>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연장: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 시설		
	종류	[ ] 제조시설 [ ]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완공 연월일	년 월 일
	제조·사용 용량	(톤/일)
	최근 정기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이번 정기검사 희망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공사 예정유무	[ ] 유(완공 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 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재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사 (검사기관) → 결과 통보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 <개정 2016. 4. 29.>

제 호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 연월일				
검사 장소				
검사대상 시설제원				
제조·사용 용량	톤/일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	
형식		가동방식		
모델번호		제조사		
제조·사용 연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특기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재개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서식] <신설 2014.7.22>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승계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피승계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대상	업종			
		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 [ ] 사망 [ ] 합병			
	승계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일반 현황	대상품목	조합원 수	분담금(원/kg)
	재활용의무총량	조합의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만 해당합니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4.7>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4. 사업 내용

5. 인가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4.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조합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인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3.11.22>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통지원센터 명칭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 센터 일반 현황	대상품목	설립 조합명	지원금(원/kg)
	품목별 회수·재활용 의무 총량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재활용 의무량	회수·재활용 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3.11.22>

제 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

1. 유통지원센터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13.11.2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

인가 번호	유통지원센터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인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 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4.7>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제품명: 종류: 규격(단위): 형태:]

연 월 일	제조량 또는 수입량	출 고 량	재 고 량	비 고	결 재	

<작성요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같은 시행령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서 분류한 종류, 규격, 재질 및 형태(뚜껑분리형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이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제조제품인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단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kg, ℓ, 개, 개비 등으로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에는 부피(ℓ)로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4.7>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제품·포장재명: (단위: kg, ℓ, 개)

연 월 일	① 회 수 내 용		처 리 내 용					④ 보관량
	업 체 명	회 수 량	② 재 활 용		③ 그 밖 의 사 항			
			방법 및 기 준	재 활 용 량	업체명	처 리 방 법	처리량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재활용량은 재활용제품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4.7>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제품명: 용량:)

연 월 일	출 고 량(개)	반 환 량(개)(회수량)

<작성요령>

1. 출고대장은 제품 및 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이 출고되고 반환될 때마다 날짜별로 적어야 하며,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4.7>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연월일	이용계획	구 입 량			이용량	보관량	비 고
		국 내	수 입	계			

<작성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량, 이용량 또는 보관량이 변경될 때마다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 또는 “kg”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구입량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이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최초 투입(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7.12.31.>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4.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연월일	지정부산물 종류	발생량	재활용 내용			수요 내용			처리 내용
			재활용량	방법	보관량	용도	제품명	인계업소	

<작성요령>

1. 지정부산물의 발생·재활용 또는 처리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 또는 "kg"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재생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첨가되는 재료 등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보관량은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을 적어야 합니다.
5. 처리 내용에는 재활용하지 않는 지정부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 207
[시행 2014.2.4] [환경부고시 제2014-15호, 2014.2.4., 제정]

【참고자료 2】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209
[시행 2015.8.26] [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 일부개정]

【참고자료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213
[시행 2017.7.19] [환경부훈령 제1269호, 2017.7.19., 일부개정]

【참고자료 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6
[시행 2016.10.10.] [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일부개정]

【참고자료 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231
[시행 2016.6.29] [환경부고시 제2016-122호, 2016.6.29., 일부개정]

【참고자료 6】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240
[시행 2017.7.19] [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 일부개정]

【참고자료 7】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 245
[시행 2014.12.1] [환경부예규 제534호, 2014.12.1., 제정]

【참고자료 8】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 252
[시행 2016.11.28] [환경부고시 제2016-212호, 2016.11.28., 일부개정]

【참고자료 9】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58
[시행 2016.3.4] [환경부고시 제2016-52호, 2016.3.4., 제정]

【참고자료 10】 2003~2017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량) ····· 260

[참고자료 1]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시행 2014.2.4] [환경부고시 제2014-15호, 2014.2.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회수·재활용량 조사 횟수) 회수·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수·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수·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2. 규칙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

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4. 비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

$$\frac{\text{(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이외의 제품·포장재의 양)} + \text{(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이외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양)}}{\text{규칙 별표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투입되는 양}}$$

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15호, 2014.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자료 2]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15.8.26] [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하되, 영 별표4 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2015년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 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 마다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9.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49호, 2015.8.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으로 한다.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참 고> 분리배출표시 도안 신·구 비교

개정사항
○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플라스틱”,“비닐류”로 표시 ○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야 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 ○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문구를 삭제 ○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

구분	기존 도안	개정 도안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팩		
종이		
유리		

※ 도안자료는 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7.7.19] [환경부훈령 제1269호, 2017.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통합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배출방식은 별표1의 제4호(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의 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재활용품 통합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 · 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 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 · 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 · 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 · 처리 등)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 · 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 · 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 · 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 · 터미널 · 휴게소 · 공원 · 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 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 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 · 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 · 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활용시설 · 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 주민참여 촉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69호, 2017.7.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 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o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o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o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o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o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비고 1.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o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o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의류 및 원단류	o 면의류 o 기타 의류 o 식물성 섬유 (면, 마 등) o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o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 기타 합성섬유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라. 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o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마. 소형가전 제품 및 이차 전 지류	o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o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바. 자 동 차 부품	o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4. 재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 분	종 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와 같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2>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제6조제2항 관련)

품 목	색 상	적용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라벨,모형 적용	접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랑색					
플라스틱류	파랑색					
비닐(필름)류	보라색					
소형가전류	빨강색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 부착

<별표 3>

통합배출 전용용기 종류(제6조제3항 관련)



재활용 그물망

80리터(원사2㎜/700㎜×800㎜, 그물코25㎜×25㎜ / 조임줄·표찰부착), 재질 PE, 색상 녹색



재활용 전용봉투

70리터(두께0.04㎝/60㎝×90㎝), 재질 HDPE, 색상 투명색



세종시 재활용 전용봉투

50리터(두께0.04㎝/58㎝×80㎝), 재질 HDPE, 색상 옅은하늘(반투명)



충주시 유리병 전용봉투

20리터(두께0.04㎝/45㎝×65㎝), 재질 HDPE, 색상 연분홍색

<별표 4>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시·군·구명)

1. 시설 일반현황

시 설 명			용 도					
소 재 지			전화번호					
소 유 자 (관리자)	성명 :							
	주소 :							
폐기물배출량	주기: (일, 주), 배출량 : (kg)							
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	품목	수집량 (kg/일)	처리 방법				현재 보관량 (kg)	
			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			
			방법	량 (kg/일)	방법 (위탁업체명)	량 (kg/일)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재활가능자원 분리수집장소, 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	○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 1.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 되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2. 형광등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확인	
2.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운반 등 적정 여부	○ 점유자의 분리수집장소(용기 포함)에서의 품목별 배출, 보관, 운반 등 여부 ※ 점유자는 시설 안의 개별 사업자를 포함	
3.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 점유자의 재활용가능자원과 그외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4.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 자가 재활용 또는 수거기관 및 재활용업자로의 공급 여부 ※ 자가 재활용방법 또는 재활용업자로의 공급시 적정 재활용업자 여부 확인(계약서 등 확인)	
5.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	○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또는 방송 등 안내·계도 실시 여부	

3. 위반 또는 조치내역

구분	위반내역					조치내역		
	분리수집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 등 부적정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계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위반 또는 조치 여부								

*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건수의 합계는 동일해야 함

4.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시·도명)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시설·장비확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구 분	재활용가능자원 전담차량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
계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계				
시군구명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용기 제작현황(단독, 공동주택, 상가지역등)

구 분	비닐포대	바구니	그물망	기타용기	미제작
계					
시군구명					

□ 집하선별장·간이보관장 현황

- 총괄

구 분	집하선별장(시군구단위)		간이보관장(읍면동단위)		간이보관소 (개소수)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부지면적(평)	
계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시군구 집하선별장중 캔·플라스틱 등 자동선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이 설치된 곳)

구 분	개소수	시설면적 (평)	처리물량 (연/톤)	설치주체 (민간/직영)	운영주체 (민간/직영)
계					
시군구명					

- 부대장비

구분	선별기	압축기	계량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기타
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주체

구분	전지역 직영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	전지역 민간대행
계			
시군구명			

□ 분리배출기준

구 분	구 분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류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 미분류는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임

□ 분리수거품목 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목명

□ 수거방법

구 분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 수집·운반방법(번호 기입)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시군구명			

① 2종 분류 운반(유리병, 기타 재활용품, 또는 폐지와 기타 재활용품등)
② 3종 분류 운반(폐지·유리병·기타 재활용품)
③ 4종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④ 품목별 정기수거일(요일) 지정·수거
⑤ 혼합하여 수집·운반, ⑥ 기타

□ 수거주기

구 분	구 분	주1회	2회	3회	매일	격주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3. 폐기물배출자 분리수거실태 점검실적

□ 점검실적 개요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개소)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등 부적정	재활용 품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 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계			건	건	건	건	건			
시·군·구명			건	건	건	건	건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 위반내역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수를 기재
2)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하게 기재

□ 특별점검대상 배출자 현황

구 분		배출자 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주소	연락처	점검 횟수 (회/년)
번호	시·군·구					
1						
2						
:	:	:	:	:	:	:
:	:	:	:	:	:	:

4. 재활용가능자원 등 교환·판매실적(민간단체 위탁 포함)

□ 재활용센터·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운영

구 분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 판매장		알뜰교환시장	
	개소수	교환판매건수 (점)	개소수	연간판매액 (천원)	개최 회수	운영실적 (점)
계						
시군구명						

*) 가전·가구등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의미(재활용품 간이보관소 아님)

5. 재활용 홍보실적

구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타
계					
시군구명					

6. 중점 추진시책

시군구명	제목	시책내용 및 일정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1. 일반현황

지자체명(홈페이지)(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2)		담당자(3)	
	전화번호(4)	( ) -	담당자 e-mail(5)	
주 소(6)	사도 사구군 동읍면 리 번지			

2. 세부 품목별 분리수거량(연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7)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종이팩(11)			(kg/년)		
유리병(12)					
금속캔(13)		철 캔			
		알루미늄캔			
합성수지	단일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14)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5)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6)			
		EPS(발포폴리스티렌)(17) PSP(폴리스티렌페이퍼)(18)			
	복합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9)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20)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1)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전지류 (22)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년)		
전자제품 (23)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광등(24)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년)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톤, kℓ/년)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소형가전제품 (25)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톤/년)		

[작성요령]

1. 일반현황

(1): 지자체명 기재(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등)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부서 기재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자 기재
(4):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6): 지자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자치단체(시·군·구)별 전년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량 기재
- 단위는 반드시 톤/년 단위로 작성
  (단, 윤활유는 kl/년으로, 형광등은 개/년으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8):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과 민간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9):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한 량 또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하여 분리수거한 량
(10):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중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9호의 분리수거한 량 외의 분리수거한 량)
(11):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kg/연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12):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13):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4):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5): "(14)~(17)" 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 (PE,PP,PS 등)
(16):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7):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8):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9):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20)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20):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22):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kg/연간을 사용)
(23):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4):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25):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참고자료 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0.10.] [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11.17.]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17.]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17.]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11.17.]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제676호,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 10. 10.>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 품 의 종 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 료	10% 이하	2차 이내
		주 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 화 류	완구 · 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 구 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 약 외 품 류	20% 이하	2차 이내
	의 류	와이셔츠류 · 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 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 ·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 ·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 ·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 · 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 품 의 종 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종합제품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향수는 제외한다)	2차 이내

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장횟수를 3차로 할 수 있다.

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하고, 보호·고정 또는 상품가치 보존을 하기 위하여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2> <개정 2011.11.17>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비 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6.3.1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 · 2004년	2005년 · 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 · 배	받침 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 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비 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 · 수입 · 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 · 수입 · 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참고자료 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시행 2016.6.29] [환경부고시 제2016-122호, 2016.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2. "종합제품"이라 함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8.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
10.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11.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
12. "포장횟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를 말한다.
13.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14. "수축포장"이라 함은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15.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②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한다.

③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22호, 2016.6.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여부 간이측정방법(제3조 관련)

1. 간이측정

가. 측정 대상 포장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시료를 메탄오나트륨 염소기 진단용액에 한 시간 이상 침지한 후 시료의 갈색 변색을 관찰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여부를 판단하거나, 불꽃에 접근시킨 후 이 시료의 연소특성을 관찰하여 판단한다. 연소특성은 인쇄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부위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의 연소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열가소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하면 오그라들면서 불꽃으로부터 분리됨
2) 착화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하여도 불이 쉽게 붙지 않음
3) 자기 소화성(自己消火性) : 불꽃에서 시료를 멀리하면 저절로 꺼짐
4) 불꽃의 특징 : 검은 연기를 내며 타고, 불꽃 색은 황색이며 아랫부분은 녹색을 띰
5) 연소 가스의 냄새 : 염소 성분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남
6) 연소 후 생성물 :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연소 후 불규칙한 검은색 덩어리가 남음
7) 불꽃반응 : 시료를 구리(銅) 선에 묻히거나 감아서 불꽃의 가장 윗 부분에 얹으면 불꽃 색이 녹색을 띰

2. 유사재질과의 상호비교

가. 연소특성 관찰을 통하여 시료 재질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로 간주되더라도, 유사재질과의 연소특성을 상호비교하여 폴리비닐클

로라이드 재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의 연소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질 종류	착화성	자기 연소성	불꽃의 특징	냄새	연소 후 생성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어려움	금방 꺼짐	황색, 아래쪽은 녹색	염소성분 특유의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남	부스러지기 쉽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나일론 (PA)	다소 어려움	금방 꺼짐	청색, 끝이 황색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약하게 남	단단하며 다갈색~회색의 불규칙한 덩어리
폴리프로필렌 (PP)	다소 어려움	계속 타 들어감	끝이 약간 황색, 아래쪽은 청색	양초(파라핀) 탈 때 나는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한 회색 덩어리
폴리에틸렌 (PE)	쉬움	계속 타 들어감	끝이 황색, 아래쪽은 청색	양초(파라핀) 탈 때 나는 냄새가 남	단단한 회색 덩어리
폴리스티렌 (PS)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검은 연기, 검댕 발생	스티로폼이 탈 때 나는 스티렌 특유의 방향	단단하고 검은 덩어리
아크릴 수지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불고기 탈 때와 다소 비슷한 아크릴 특유의 냄새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비닐아세테이트수지 (PVAc)	쉬움	계속 타 들어감	암황색, 불꽃이 튐, 검은 연기	빙초산과 비슷한 시큼한 냄새	약간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폴리비닐알콜 (PVA)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아래쪽은 청색	PVA가 탈 때 나는 특유의 달콤한 냄새	단단하며 다갈색~흑갈색 불규칙한 덩어리
폴리에스테르 (PET)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불꽃이 튐, 검은 연기	벤젠과 비슷한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고 검은 덩어리
폴리카보네이트(PC)	쉬움	서서히 꺼짐	황색, 약간씩 불꽃이 튀며 검은 연기	방향족과 비슷한 특유의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며 다갈색~흑갈색 덩어리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수지 (EVA)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검은 연기	빙초산과 비슷한 시큼한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비고>

- 착화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했을 때 시료에 불이 붙기 쉬운가?
- 자기연소성(自己燃燒性) : 시료에 불이 붙은 다음 불꽃에서 시료를 멀리할 때 계속 타 들어가는가(자기 연소) 또는 꺼지는가(자기 소화)?
- 불꽃의 특징 : 불꽃 모양, 불꽃 색, 연기·그을음의 발생 여부는?
- 연소 후 생성물 : 타다가 꺼진 부위의 모양·색, 재의 상태 등은 어떠한가?

<별표 2>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1. 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 확인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령으로 제품의 종류 및 특성 등을 확인한 후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1. 대상제품 종류의 확인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려는 대상제품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중 어떠한 제품군에 속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2. 대상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인 지 여부

가.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이라 함은 제품이 접착되거나 혼합되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로 포장된 두 개 이상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제품을 말한다.

나. 이 경우, 낱개의 구성품은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용도 및 유형별로 포장하여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을 포함한다.

다. 낱개의 구성품은 개개품 자체를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1-3.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가.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Tea-bag차 포장된 홍차·녹차 등을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1-4.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종합제품) 하였는지 여부

가.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25%) 및 포장횟수(2차 이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즉,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 측정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다. 이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개개의 제품이 포장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체적에 필요공간용적만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1-5. 제품의 보호 등을 위한 받침접시 사용여부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6.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서 2차 이상 포장여부

병, 캔 등으로 1차 포장한 상품을 상자 등으로 2차 포장한 단위제품의 경우에는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여야 한다.

1-7. 분말제품(분말 세제류 등)의 제품체적 측정

다져진 분말 제품이 점검시점에서 공극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메스실린더로 옮겨 부어 제품체적을 측정한다. 이때 메스실린더 내에서 제품이 다져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제품체적으로 한다.

1-8.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필요공간용적 가산

제품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인정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가로(장), 세로(폭), 높이(고) 방향에 대해서 각각 10mm(5㎜×2) 씩을 더하여 가산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다만, 병이나 통 형태의 성형 용기 내부에 완충 또는 고정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높이 방향에 대해서만 10mm를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text{가산 제품체적}(V) = (a+10)\times(b+10)\times(h+10) \quad \text{(일반제품)}$$
$$= \pi\times(a/2)\times(b/2)\times(h+10) \quad \text{(병/통 형태 용기)}$$

1-9. 사용상 의도한 첨가물이 필요한 포장제품의 제품 체적 범위(우유를 붓는 팬케이크, 1회용 시리얼, 컵라면, 염색약 혼합제제 등)

가.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되, 그 내용물(라면+스프류 등)은 이러한 가상 제품체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또한 포장 내에서 조리에 의해 제품이 완성될 경우에는 조리된 제품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다만, 컵라면과 같이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수준에서 제품의 높이방향으로 3c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며, 컵밥과 같이 조리 과정에 끓어오름 등에 의해 부피가 팽창한 뒤 조리 후 체적이 감소하는 제품은 실제로 조리하여 팽창하는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1-10. 필로우포장 형태 등의 음식료품류 공기충전 포장 측정

가. 포장용적은 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사용하여 실링부분이 닫힐 수 있을 때까지 충전하여 필로우포장의 최대부피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이때, 실험기구는 2000㎖의 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제품체적은 제품의 상단부분을 개봉하여 메스실린더(2000㎖)와 제품의 개봉입구가 맞닿게 하여 제품을 자연낙하 시켜 측정한다. 이때, 손으로 메스실린더 하단부를 가볍게 2~3회 두드려 준다. 다만, 제품의 길이, 형태, 무게 등이 일정한 경우 개별 측정하여 산출한다.

1-11. 컵 포장 음료 및 가공식품의 포장 자동화 공정기술에서 최소 필요공간을 고려한 제품 체적 범위

컵 커피나 주스, 떠먹는 요구르트와 같이 컵 포장형태의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자동화 포장공정에서 내용물의 넘침 및 포장마감의 불량 등 제품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공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품의 경우 컵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의 표면에서 높이방향으로 10 mm 가산한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1-12. 음료용 가공식품류 카톤팩 포장 및 소량의 병 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용적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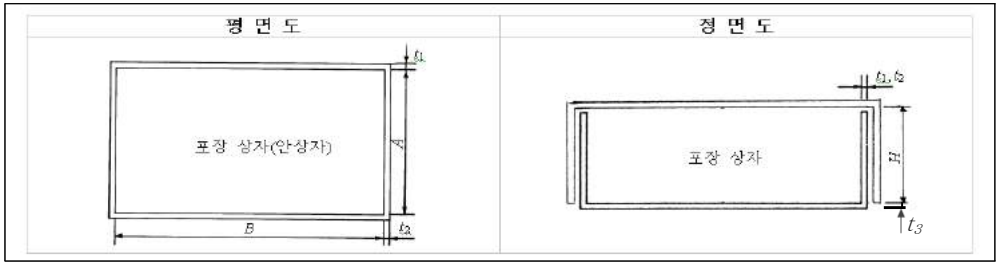
우유 및 유가공 음료, 주스와 같은 음료류 또는 음료용 가공식품의 포장용적을 측정하는 경우 카톤팩 형태 포장의 개봉구를 형성하는 상단부 첨탑모양의 접힘구조(Gable Top)와 소량(400㎖ 미만)의 병 포장 제품의 병구부분은 제품의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임을 고려하여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2.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포장용적,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측정하여 포장공간 비율을 산출한다.

2-1. 포장용적

<포장 용적 산출 방법>



가. 포장용기(상자)의 안치수를 계측하여 용적을 구한다. 간단히 아랫상자의 내치수를 안치수로 간주하여 측정하기도 하지만, 윗상자의 안쪽 높이와 아랫상자의 바깥쪽 높이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윗상자의 내부 윗면에서 아랫상자의 내부 아랫면까지 길이를 높이로 본다.

나. 포장용기(상자)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 부분을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또한 포장용기의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초과하는 두께는 포장용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다만, 발포스티렌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용기(상자) 두께가 제품의 보냉을 위하여 30m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포장용적(C) = {A+2(t1−10)}·{B+2(t2−10)}·{H+2(t3−10)}

다. 종합제품의 포장에서 포장 상자의 두께가 10mm 이하인 경우 포장상자의 앞뒷면 및 양 옆면에(윗면과 아랫면은 제외) 한하여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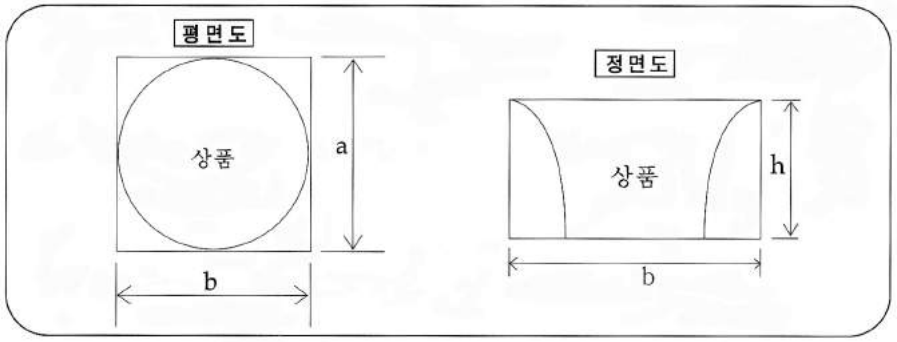
포장용적(C) = {A−2(10−t1)×0.6}·{B−2(10−t2)×0.6}·H

라.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 이하인 단위제품의 경우는 실측한 포장용기의 안치수를 계측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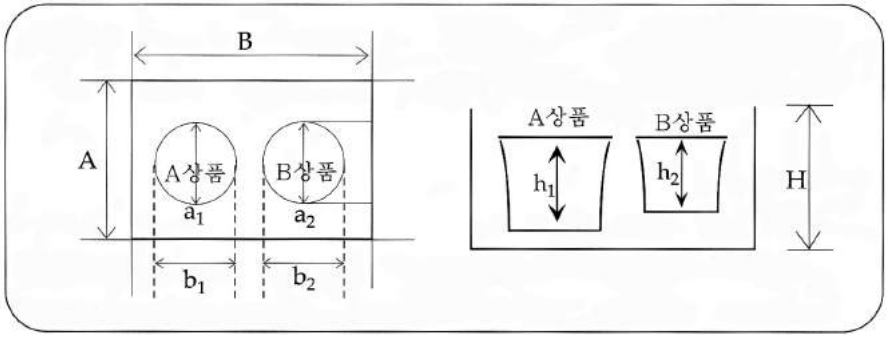
포장용적(C) = A·B·H

2−2. 제품체적

가. 제품체적이란 단순히 대상제품의 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체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상하좌우가 바뀌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최소의 최적을 구하기 때문에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나. 2개 이상의 제품 또는 부속품을 함께 포장했을 경우 각각의 체적을 구한 후 더한 값을 제품체적의 합으로 본다.



다. 완구나 인형류 등 여러 개의 부품이 포장용기(상자)내에 일정한 상태로 상호 접촉하여 자연적치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태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제품을 하나의 제품덩어리로 가상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다만, 제품의 포장용기(상자)가 개봉 이후에도 제품 보관용도로 상시 사용되고 제품 보관시의 편리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 원통형 포장의 블록 보드게임 제품) 제품의 보관상태를 고려하여 제품체적을 측정한다.

라. 병, 상자, 캔 등에 포장된 액체류, 분말류, 입자(알약과 같은 정제류 등) 등 충전제품의 체적은 실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체적을 구하여

제품체적으로 한다. 이 때, 계량도구, 제습제 등 고정된 형태의 제품이 혼입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체적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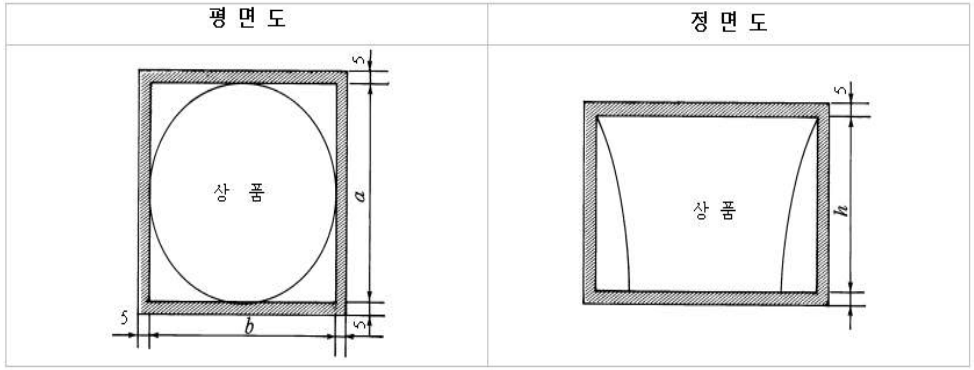
마. 시트 및 필름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접착봉합한 제품은 접착봉합폭의 최대 10㎜까지만 제품체적으로 인정한다.

바. 블리스터 포장 등 대지, 받침판 등을 사용한 제품은 접착 부위 또는 부풀어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 10㎜까지만 제품체적으로 인정한다.

사. 끈이나 줄이 있는 제품은 제품과 끈, 줄 등을 각각 측정하고, 끈, 줄은 펼친 상태로 측정한다.

2-3. 필요공간용적

가. 제품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가상공간을 두어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인정하여 준다. 이 여유공간이 필요공간용적이다.



필요공간용적 (V′) = (a + 10) (b + 10) (h+10) − a·b·h

나. 병이나 통 형태의 성형 용기 내부에 완충 또는 고정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높이 방향에 대해서만 10mm 두께의 가상공간을 인정한다.

다. 두께 1㎜이하의 평면 속지 및 테이프, 접착제류 등에 의한 고정은 완충·고정재로 보지 않으며 필요공간용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크기가 다른 여러 제품을 상호 접촉시켜 하나의 완충 또는 고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완충 및 고정이 이루어지는 제품과 그 방향에 대해서만 5㎜를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2-4. 포장공간비율 산출

포장공간비율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산출결과가 “0이하” 일 때는 “0”으로 처리한다.

$$\text{포장공간비율}(\%) = \frac{C-(V+V')}{C}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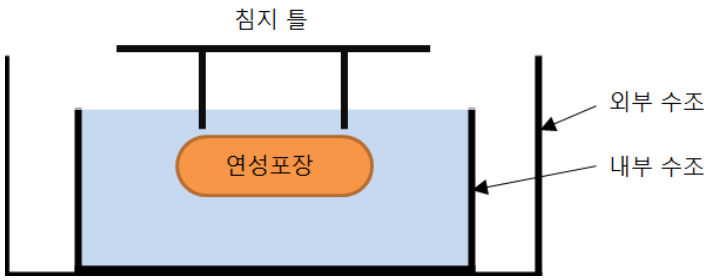
여기서 C : 포장용적, V : 제품체적, V ' : 필요공간용적

2-5. 측정기구 및 측정방법

가. 포장용적, 제품체적 산출을 위한 치수측정은 KS B 5203의 버니어 캘리퍼스 및 KS B 5246의 금속제 곧은 자를 사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고, 각 부위별(가로, 세로, 높이 등) 3회 측정치의 평균치를 구하여 포장용적 또는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용기(병 종류, 블리스터 포장, 연성포장 등)의 체적(또는 용적) 측정은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필요시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용기에 물 또는 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충전하여 그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포장 용적을 측정한다. 다만, 이때 충전물질의 자중에 의해 용기의 변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다. 튜브형 포장을 포함한 연성포장 포장용적 측정은 이중 구조의 수조(필요시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혹은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를 이용한 부피 대치법을 적용하여 내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틀을 사용하여 시료를 완전히 침지시켜 외부 수조로 넘친 물의 부피를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용기의 내부체적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포장재 자체 부피 측정하여 차감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이때 시료의 침지 과정에서 틀의 침수에 따른 부피는 차감하여 보정한다.



3.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 산출시 중점 고려사항

동일한 제품체적을 가지는 제품일지라도 완충·고정재의 사용여부뿐만 아니라 포장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공간용적은 변화되므로 올바른 포장공간비율 산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3-1. 포장용적 산출시 고려사항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10mm를 초과하는 경우 두께 초과부분은 포장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10mm이하인 종합제품은 앞뒷면 및 양 옆면에 한하여 미달되는 두께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하고, 단위제품은 실측한 안치수만으로 포장용적을 산출한다.

3-2. 제품체적 산출시 고려사항

가. 제품이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검토한 후 만일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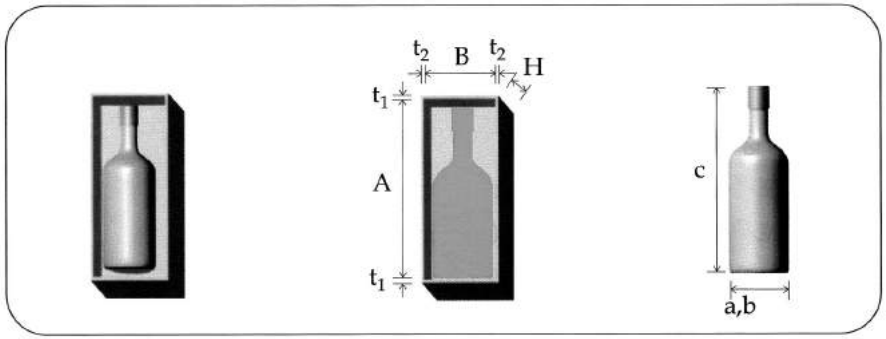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 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일률적으로 10mm(5mm×2)씩을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한다.

4. 공간비율산출 실례

공간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대상제품이 단위제품 혹은 종합제품인지 그리고 완충·고정재 사용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례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자.

4-1. 단위제품(완충·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ㅅ사에서 생산되는 용량 700mL 위스키 1개는 종이 완충·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주류 단위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이상이고 종이 완충·고정재가 사용된 단위제품이므로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였으므로 10mm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포장용적(C) =

$$\{A+2(t_1-10)\} \times \{B+2(t_2-10)\} \times \{H+2(t_3-10)\}$$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2) 제품체적 :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10mm(5mm×2)

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제품체적(V) = (a+10)×(b+10)×(c+10)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ㅅ사에서 생산되는 주류제품의 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치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10.5mm

(나) 포장용기의 길이 : 260.0mm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95.0mm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95.0mm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포장용적(C) =

{266+2(10.5−10)}×{95+2(10.5−10)}×{95+2(10.5−10)}

= 2,405,376mm3(1)

(2) 제품의 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위스키의 길이 : 256.0mm

(나) 위스키의 폭의 길이 : 82.0mm

(다) 위스키의 높이의 길이 : 82.0mm

(라) 제품체적(V) =

(256+10)(82+10)(82+10)=2,251,424.0mm3 (2)

(3) 포장공간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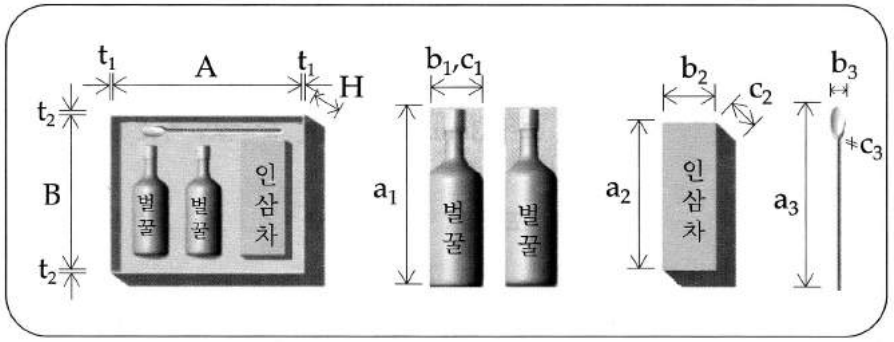
$$= \frac{\text{포장용적(C)} - \text{제품체적(V)}}{\text{포장용적(C)}} \times 100$$

$$= \frac{2,405,376.0 - 2,251,424.0}{2,405,376.0} \times 100$$

= 6.4(%)

라. 이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6.4%이므로 기준(10% 이하)을 만족한 적정포장으로 판정된다.

4-2. 종합제품(완충·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ㄱ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선물세트의 경우 벌꿀, 인삼차, 스푼 등의 PVC 이외의 단일재질 플라스틱 완충·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건강식품 종합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 이하이고 플라스틱 완충·고정재가 사용된 종합제품이므로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포장용적(C) = {A−2(10−t1)×0.6}{B−2(10−t2)×0.6}×H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t1 : 포장용기의 폭방향 두께, t2 : 포장용기의 장방향 두께

(2) 제품체적 :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10mm(5mm×2)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제품체적(V) = (a+10)×(b+10)×(c+10)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ㄱ사의 건강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치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3.0mm

(나) 포장용기의 길이 : 441.0mm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298.0mm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74.0mm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포 장 용 적 (C) =
{441-2(10-3)×0.6}{298-2(10-3)×0.6}×74 = 9,270,791.0mm3 (1)
(2) 선물세트 구성상품명 : 벌꿀 2개, 인삼차 1개, 스푼 1개
(가) 벌꿀의 길이 : 159.0mm
(나) 벌꿀의 폭의 길이 : 91.3mm
(다) 벌꿀의 높이의 길이 : 56.7mm
(라) 제품체적(V1) =
(159+10)(91.3+10)(56.7+10)=1,141,884.0mm3 (2)
(마) 인삼차의 길이 : 190.0mm
(바) 인삼차의 폭의 길이 : 139.0mm
(사) 인삼차의 높이의 길이 : 53.2mm
(아) 제품체적(V2) =
(190+10)(139+10)(53.2+10)=1,883,360.0mm3 (3)
(자) 스푼의 길이 : 234.0mm
(차) 스푼의 폭의 길이 : 39.0mm
(카) 스푼의 높이의 길이 : 10.8mm
(타) 제품체적(V3) =
(234+10)(39+10)(10.8+10)=248,684.8mm3 (4)
(3) 포장공간비율

$$= \frac{\text{포장용적(C)} - \sum\text{제품체적}(V_1\times 2) + V_2 + V_3}{\text{포장용적(C)}} \times 100$$

$$= \frac{9,270,791.0 - [(1,141,884.0\times 2) + 1,883,360.0 + 248,684.8)]}{9,270,791.0} \times 100$$

= 52.4%

라. 이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25%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대포장이므로 다시 포장 설계하여 적정포장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6]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7.19] [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40호, 2017.7.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재활용 현장여건과 이들 제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실리카 증착 등 투명필름 차단제	○			
	알루미늄 첩합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별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1등급으로 평가
잡자재	합성수지 재질 빨대	○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		

2.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소다석회	○			
		유백유리			○	
	색상	무색, 갈색, 녹색	○			
		기타 색상			○	
라벨	종이 재질		○			
	합성수지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인쇄	무색 외의 병	○			
		무색병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	재활용공정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 2등급으로 평가
마개 / 잡자재	몸체와 분리되는 경우		○			마개·테 일체형 등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	마개·테 분리형 등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마개 제외

3. 금속캔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철 캔[주1], 알루미늄 캔		○			
	에어로졸 용기			○		
	납땜캔				○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마개 / 뚜껑	몸체와 동일한 재질		○			
	합성수지 재질			○		알루미늄 마개에 도포된 경우 포함
	EOE 탭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소비자 사용 시
		몸체와 분리 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주1) 철 캔은 구성항목과 상관없이 다른 재질과 혼용하여도 재활용용이

4.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주1)]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	○			
		복합재질			○	
		기타 재질과의 조합			○	첩합 등
	색상	백색	○			
		백색 외 색상		○		유색 코팅 포함
마개/라벨/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주2)]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주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틴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폴리스티렌페이퍼를 말함

주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용이

5. PET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유색단일재질			(녹색) (하늘색[주1)]	○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갈색[주2)]	○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수분리성 접(점)착식	○			
		비수분리성 접(점)착식[주3)]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	
	몸체에 직접인쇄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마개/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고무·금속 등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6.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색상	검은색 계열 이외 색상	○			
		검은색 계열의 색상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인 경우				○	
마개/라벨/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재질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7.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몸체외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8.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필름·시트형 포장재[주1]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합성수지 재질의 복합재질		○			
	알루미늄 증착		○			
	PVC 계열의 재질[주2]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	
라벨/마개/잡자재	합성수지의 단일·복합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참고자료 7]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4.12.1] [환경부예규 제534호, 2014.1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14.7.30)(이하 "고시"라 한다)」제4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이하 "재질·구조개선 제도"라 한다)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이하 "재질·구조개선 기준"이라 한다)이란 고시 제3조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것을 말한다.
3.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재질·구조개선 평가와 관련된 평가 신청서의 접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시험·분석 등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질·구조개선 대상 및 기준

제3조(적용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고시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재질·구조개선 사항)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특성·경제성, 국내 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구조개선 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사용 확대
2. 포장재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3. 재질별로 쉽게 분리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
4. 포장재의 재질이 2가지 이상 결합 또는 복합되어 사용되거나, 여타의 재질을 첩합(라미네이팅), 코팅(도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구조로 개선

제3장 평가심의위원회

제6조(평가심의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5년 이상의 책임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 5년 이상의 경력자
4. 환경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④ 평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심의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

심의위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라 위촉받은 자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업무 담당자 2명 이내,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심의
   단,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
2.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신청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권고
5. 재질·구조개선 기준 제·개정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여 상정하는 안건 논의

제4장 재질·구조개선 평가

제8조(평가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새로운 포장재를 설계·수입하거나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 사항을 평가한 포장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재질·구조개선 여부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심의)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평가·심의에 참여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신청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운영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어려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평가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재질·구조개선 제안

제12조(재질·구조개선 제안) ① 제3조에 따른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포장재에 대하여 재질·구조개선 제안을 운영기관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질·구조개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포장재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제8조의 평가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의 재질·구조개선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

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질 · 구조개선 제도 운영

제1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고시 제5조에 따라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제2조제4호에 따른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평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3. 평가심의 결과 통보
4.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조치
5. 재질 · 구조개선 제안에 대한 접수 및 조치
6. 재질 · 구조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7. 재질 · 구조개선 등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질 ·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제14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은 재질 · 구조개선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 · 구조개선 평가 포장재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질 · 구조개선 등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직접적인 비밀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재질 · 구조개선 포장재 목록 및 평가 내용
2. 새로운 재질 · 구조의 포장재 출시
3. 기타 재질 · 구조개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심의 결과, 모든 항목이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의결받은 포장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홍보 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① 운영기관은 매년 재질 · 구조 개선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7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로 평가심의 받은 포장재를 출시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평가심의위원회에 참가한 평가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질 ·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고 취급되도록 한다.
2. 신청자의 정보는 재질 · 구조개선 평가심의 및 검토의견 제출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신청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3자에게 신청자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비밀 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보기능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얻은 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 및 그 밖에 인증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534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

업체정보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위)		이메일 주소	
	주 소(연락처)	☎		

평가제품	포장재 품목	제품명	용량 (g, ㎖)	최초출시일자	개선일자

평가결과	평가항목	재질·구조		평가결과[주3]
		개선기준[주1]	구성요소[주2]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작성요령>

주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재질·구조"를 기재

주2) 포장재(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 제조상의 주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등의 상세내역과 그 사용비율을 기재 (착색을 위해 사용되는 염료 또는 안료 사용비율도 포함)

특히, 포장재의 재질이 2가지 이상 결합 또는 복합되어 사용되거나, 여타의 재질을 첩합(라미네이팅), 코팅(도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물질과 사용비율을 상세히 기재

주3)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다만, 재활용 어려움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의견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의견서

1. 일반사항

접수번호		심의일자	
업체명		제 품 명 (용량 g, mℓ)	

2. 평가내용

항 목	평가결과			평가의견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1등급	2등급	3등급	
몸 체				
라 벨				
마 개				
잡자재				

※ 항목별로 평가결과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로 해당 평가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 결과

위 업체의 제품 포장재는 (□1등급, □2등급, □3등급)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상과 같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심의위원 :

(인)

<별지 제3호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의결서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평가의결서

1. 일반사항

업체명		제 품 명 (용량 g, mℓ)	

2. 최종 심의결과

평가심의위원회 결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의결이유	

20 년 월 일

평가심의위원장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평가심의위원 _____(인)

<별지 제4호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결과 통보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결과 통보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결과

제품명		용량(g, ㎖)	
항 목	항목별 평가결과	최종 확정결과	비 고 (개선요구사항)
몸 체			
라 벨			
마 개			
잡자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위)		이메일 주소	
	주소(연락처)			

신청제품	포장재 품목	제품명	용량(g, ㎖)	결과통보일자

이의신청 내역	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안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안서

제안자	업체명(성명)				
	주소(연락처)				
제안 제품	제안제품 세부내용				
	제품사진	제조업체명	제품명	용량(g, ㎖)	비고
	별첨 가능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의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행한다.

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 내·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4.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개인과 본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다.

5.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평가 신청제품에 대한 기밀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 일 자 : 20 . . .
- 성 명 : (인)

[참고자료 8]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28] [환경부고시 제2016-212호, 2016.1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

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삭제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 재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016-212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도안(제9조 관련)



<별표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재교부시의 제출서류(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출 서 류
분실·소실	·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자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 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	·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 대상 제품·포장재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명 기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 1부.
4.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승인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결 재	인증서 발급
신청업체	운 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 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연락처)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

신청 대상 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명 기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번호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제품·포장재명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상기 제품·포장재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품·포장재임을 인증함.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이의신청명				
이의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증빙 자료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승인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인증번호			인증 제품·포장재명	
인증유효기간	~			
신청사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제출서류	제11조제1항에 의한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인증번호		인증대상		
인 증 유효기간	. . . ~ . . .	인증연장 유효기간	. . . ~ . . .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1부 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 1부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승인서 1부.

[참고자료 9]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4] [환경부고시 제2016-52호, 2016.3.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2호, 2016.3.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0] 2003~2017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량)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기준비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 종 이 팩		185원	15,500 (0.236)	20,730 (0.294)	0.278	0.266	0.280	0.291	0.305	0.327	0.340 改)0.327	0.360 改)0.341	0.341	0.346	0.348	0.350	0.350
나. 유 리 병		34원	298,798 (0.679)	313,284 (0.621)	0.672	0.684	0.708	0.726	0.737	0.751	0.765 改)0.757	0.778	0.760	0.760	0.763	0.763	0.763
다. 금속캔	(1) 철캔	87원	180,000 (0.832)	172,000 (0.731)	0.700	0.710	0.720	0.730	0.740	0.756	0.771	0.786	0.786	0.797	0.808	0.808	0.808
	(2) 알루미늄캔	151원			0.700	0.712	0.717	0.730	0.740	0.756	0.771	0.786	0.786	0.791	0.797	0.797	0.797
라. 합성수지 포장재	(1) EPS, EPP, EPE단일복합	317원	10,100 (0.533)	11,063 (0.564)	0.613	0.629	0.690	0.748	0.748	0.760	0.772	0.781	0.781	0.790	0.795	0.807	0.807
	(2) 단일·복합 PVC재질	981원	(0.396)	1,878 (0.473)	0.480	0.484	0.556	0.583	0.598	0.600	0.622	0.664	0.664	0.690	0.765	0.735	0.733
	(3) PET병 가)단일재질 무색	178원	71,800 (0.680)	83,114 (0.725)	0.695	0.704	0.717	0.737	0.749	0.764	0.783	0.806	0.806	0.812	0.818	0.818	0.818
	(3) PET병 나)단일재질 유색	235원				0.704	0.717	0.737	0.749	0.764	0.783	0.806	0.806	0.812	0.818	0.829	0.818
	(3) PET병 다)복합재질	360원			0.695	0.704	0.717	0.737	0.749	0.764	0.783	0.806	0.806	0.812	0.818	0.818	0.830
	(4) (1)~(3)외의 단일 용기·트레이	327원	80,715 (0.396)	70,614 (0.483)	0.502	0.528	0.585	0.628	0.653	0.702	0.757	0.800	0.800	0.806	0.821	0.833	0.796
	PSP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327원	2,000 (0.168)	2,585 (0.204)	0.249	0.280	0.317	0.339	0.339	0.367	0.400	0.423	0.423	0.423	0.423	0.423	0.423
	(5) (1)~(3)외의 필름·시트형	467원	(0.396)	20,726 (0.282)	0.368	0.387	0.414	0.433	0.476	0.517	0.562	0.600	0.600	0.603	0.628	0.652	0.653
	(6) (1)~(5)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2. 제18조제2호 (전기·전자기기류)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317원	10,100 (0.533)	11,063 (0.564)	0.613	0.629	0.690	0.748	0.748	0.760	0.772	0.781	0.781	0.790	0.795	0.807	0.807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467원												0.603	0.628	0.652	0.653
3. 제18조제3호 (1회용 쇼핑백)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467원												0.603	0.628	0.652	0.653
4. 제18조제8호	수산물 양식용 부자	627원									0.277	0.277	0.285	0.280	0.281	0.281	0.281
5. 제18조제9호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527원														0.300	0.300
6. 제18조제10호	김 발장	545원														0.798	0.798